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호구역 출입 허가 시 출입가능 범위 명시 등〉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83)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2211183)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보호구역 출입 허가 시 출입가능 범위 명시 및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3
2. 항공보안 자율신고 면책규정 신설(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16
3.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50조)	20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221118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은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30.
3. 회 부 일 : 2025.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생시킨 자가 항공보안 자율 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항
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
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 라.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
설함(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호구역 출입 허가 시 출입가능 범위 명시 및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은 공항운영자가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방해행위에 대해 인지하게 될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u>점검업무를</u>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 ----- ----- <u>점검·조사</u> <u>업무를</u> -----.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u>불법방해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u>현장점검</u> 을 할 수 있다.	③ ----- ----- ----- ----- <u>현장점검 및 조사를</u>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업무의</u>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공항운영자등에게</u>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 <u>제1항부터 제3항</u> <u>까지에</u> ----- <u>점검·조사업무의</u> ----- ----- <u>관계 기</u> <u>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u>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u>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 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⑤ ----- <u>제1항부터 제3항</u> <u>까지에</u> ----- <u>점검·조사 결과</u> ----- ----- ----- ----- -----.
⑤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u> 하는 경우에는 <u>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u>	⑥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u> ----- <u>점검·</u> <u>조사를</u> ----- <u>점검·조사 7일 전까</u>

현행	개정안
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9.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 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계획을 점검·조사 대상자에게----- -----, ----- ----- ---점검·조사----- ----- -. ⑦ ----- 점검·조사업무----- -----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점검·조사를----- ----- -----. ⑨ ----- -----점검·조사업무----- ----- -. 제51조(과태료)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제5항에----- ----- 10. · 11. (현행과 같음) ② ----- ----- -----.

현행	개정안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3조제4항에-----점검·조사업무의-----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가. 검토의견

최근 승무원들이 비상문을 열고 항공기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촬영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항공기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공기 보안점검표에는 항공사가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내부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이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항공기 내·외부점검이 미흡했던 사례가 있었으며,¹⁾

김해 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용역업체 직원이 승객인 것처럼 탑승권을 임의로 발급받아 보안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안구역 무단 출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²⁾

1) 뉴스1, 「항공기 날개 위 인증샷…김은혜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2025.3.20.

2) KBS 뉴스, 「출입증 없이 무단 진입…“김해공항 보안 구멍”」, 2025.8.1.

이에 개정안은 ①출입가능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방해행위³⁾에 대해 인지하거나 공항운영자 등의 보고(제19조제1항)⁴⁾ 또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33조의2제1항)⁵⁾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근거를 두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항공사 보안·안전 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1) 출입가능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안 제13조제2항 신설)

먼저 출입가능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국제공항보호구역출입증규정」

3)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4) 「항공보안법」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①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

3. 그 밖에 항공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항공보안법」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등에 근거하여 대상자별로 보호구역 내 출입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출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⁶⁾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상자별 출입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통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의 출입구역 분류표 】 7)

고유문자	출입구역	세부시설
A	관제시설 지역	관제탑, 계류장관제탑 관제실, AICC, 서울접근관제소,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비상접근관제소
B	항공기 탑승지역	여객터미널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지역부터 항공기 탑승지점까지 출국지역(3층), 출입국 심사장 및 환승지역, 탑승동 출발 및 환승지역, 셔틀트레인 지역, 국내선 출발지역 및 수하물 수취지역
C	수하물 수취지역	국제선 도착수하물 수취지역(1층), 입국심사 완료지역(2층)
D	부대건물 지역	관제송신소, 관제수신소, 왕산레이더, 제1/2신블레이더, 정보통신동, 주변전소A/B, TVOR/DME, VOR/DME, 제1/2계류장관제탑(관제실 제외), 동철기장비고D, 항공등화작업장, 화물배전변전소(일반변전소), 제2/3/4등화제어소(배전변전소), 동력동A/B/C, 기상레이더, 제2계기착륙표지소, 통신시설동
E	항공기 이동지역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여객/화물) 등을 포함한 항공기 이동지역, 이동지역주변 GSE도로, 수하물처리지역, 지하공동구, 소방대, 기상대본부, 동철기장비고A/B/C/E
F	화물터미널지역	화물터미널 전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

다만, 개정안은 신설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않는데, 보호구역 출입통제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제13조제2항을 함께 개정하여 종사자별 보호구역 출입 목적 및 업무관

6) 「인천국제공항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12조(출입구역의 구분) ① 사장은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의 출입구역은 별표1과 같이 출입구역별로 고유문자를 부여하고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사장은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증 발급시 개인별 직무수행 내용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출입구역을 부여할 수 있다.

7) 「인천국제공항보호구역출입증규정」 별표1

련성⁸⁾을 고려한 출입가능 보호구역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⁹⁾

【 출입증 발급 확인서(출입구역 구분) 】 10)

출입증 발급 확인서					
[임시상주, 임시비상주, 방문증]					
접수번호 : 출입기간 : 출입목적 :					
인 술 자					
소 속 : 성 명 : 발급번호 : 인가구역 : 연 락 처 :					
[준수사항]					
1. 출입자는 보호구역 출입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인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인술자는 출입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인술의무가 있으며, 출입자를 중복하여 인술할 수 없다. 3. 인술자는 출입자의 출입증 분실 또는 규정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출입구역 구분					
A : 관제시설지역, B : 항공기 탑승지역, C : 수하물 수취지역 D : 부대건물지역, E : 항공기 이동지역, F : 화물터미널 지역					
위와 같이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을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출입자 명단					
순번	출입증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출입구역
1 / 20					
2 / 20					

8) 국토교통부는 ‘승무원’의 경우 출입가능구역 구분 없이 모든 구역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와 무관하게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제재가 어려운 등 보안상 취약요인이 있고, 모든 항공종사자에 대해 출입허가 시 업무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가능구역을 특정하여 공항 및 항공기 출입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인천국제공항보호구역출입증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2)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안 제33조 등)

개정안은 현행법상 항공보안 감독을 위한 점검에 더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방해행위에 대해 인지하거나 공항운영자 등의 보고(제19조제1항)¹¹⁾ 또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33조의2제1항)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이를 위한 자료제출의무, 합동조사, 시정조치 등 관련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이 발생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지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우 실시할 수 있는 「항공안전법」의 사실조사¹²⁾와 같이,

개정안은 「항공보안법」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보안사고 조사규정을 마련하여 사고발생 경위 조사 및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이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의무 등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항공보안 감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 「항공보안법」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①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
3. 그 밖에 항공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항공안전법」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할 경우에 안 제33조 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점검’과 ‘조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조사와 구별되는 점검의 정의가 무엇인지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점검’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비고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u>점검업무</u> 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 ----- ----- <u>점검·조사업무</u> ----- -----.	(점검조사 공통) 국토부 장관이 <u>점검·조사</u>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보안감독관 지정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불법방해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u>조사</u> 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의 <u>조사</u> 실시 근거 신설 ※ 국토부장관의 <u>점검</u> 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은 ~ 점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u>현장점검</u> 을 할 수 있다.	③ ----- ----- ----- <u>현장점검 및 조사</u> -----.	(점검조사 공통) 합동 현장점검 및 조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점검업무</u> 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u>점검·조사</u> 업무의-----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 -----.	(점검조사 공통) 자료제출의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점검·조사 결과----- -----.	(점검조사공통) 시정조치 등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점검·조사를-----점검·조사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계획을 점검·조사 대상자에게----- -----점검·조사-----.	(점검조사공통) 사전 통지
⑥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⑦ -----점검·조사업무----- -----.	(점검조사공통) 공항시설 출입 검사

항공보안법령의 위임을 받아 점검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에 따르면,

현행법 제33조에 따라 실시되는 보안 점검(예규 제8조)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불시평가 등을 말하고, 보안사고 조사(예규 제29조)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방해행위 등 중요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경위 및 책임자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말함.

즉, 보안점검 활동은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활동이고, 보안사고 조사는 사고 발생 이후 위반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하는 사후 대응적 활동이라 볼 수 있으며,

개정안은 아래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제28조 ‘보안사고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개념이 구별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8조(보안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대하여 연간 감독계획에 따라 보안평가, 보안점검, 현장조사 및 불시평가 등의 점검활동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안점검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이외에 관계기관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생략)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정의를 준용한다.

2. "점검활동"이란 항공보안감독관 등이 보안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0조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3. "현장조사(Survey)"란 민간항공에 대한 항공기납치(Hijacking), 파괴행위(Sabotage) 및 테러공격(Terrorist attack) 등의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약성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3의2. "보안평가(Audit)"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수립한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제 이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안점검(Inspection)"이란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5. "불시평가(Test)"란 보안업무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 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보안사고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 또는 민간항공 보안에 대한 중요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사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사고발생 경위
2. 위반사건에 대한 취약점 파악 및 해당 사고의 설명
3.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자 또는 기관 파악
4. 법률 또는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야기 시켰는지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사고 조사 보고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방안 및 시행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④ 보안사고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이 실시하며, 사고 조사 대상 부서에서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보안사고 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자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타 체약국 국민이 관련된 경우 해당국가의 전문 조사요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에 대해 실시하는 지상안전관리 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및 지상안전사고의 조사의 근거를 함께 두고 있는 「공항시설법」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겠음.¹³⁾

13) 「공항시설법」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국토교통부는 ①보호구역 출입가능범위 명시와 관련하여 종사자별 보호구역 출입목적에 고려해 출입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보호구역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②보안사고 조사 근거 신설과 관련하여 출입국 심사 시간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수집이 원활해지는 등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고조사와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임.

2. 항공보안 자율신고 면책규정 신설(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개정안은 항공보안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10일 이내에 자율신고를 할 경우, 고의·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실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u>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⑤ (생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항공보안 위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징후를 미리 발견할 경우 승객 및 항공종사자 등 누구나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자율신고**¹⁴⁾를 실시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분 비밀 유지, 공항운영자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¹⁵⁾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자율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담당자의 실수로 승객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으로 게이트를 통과한 보안사고가 있었으나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보안담당 기관에서 은폐하려 한 사례¹⁶⁾ 등 관련자가 보안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1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Security)에 ‘각 체약국은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밀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운영 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4년부터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제도를 운영 중임.(항공보안 365)

15) 「항공보안법」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항운영자들은 소속 임직원이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연합뉴스, 「위태로운 공항 보안…뚝려도 ‘쉬쉬’, 신고해도 ‘판청」, 2025.2.27.

개정안은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위반 사실에 대해 자율신고를 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 관련 벌칙 등¹⁷⁾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여, 보안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처분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여 항공보안을 악화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자율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항에서 관련자의 실수로 인한 보안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항공 보안 관련 사고 예방 및 관련 보고를 통한 사고 대응의 신속성 및 효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하게 「항공안전법」에서는 누구든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안전사건 등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의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항공안전장애를 일으킨 사람이 1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할 경우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제도를 두고 있음.

17)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개정안의 ‘항공안전 자율신고’¹⁸⁾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국토교통부는 신고활성화를 촉진하여 보안사고의 신속한 적발과
시정이 가능하며 자발적인 내부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18) (개정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50조)

개정안은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⑤ ~ ⑨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제5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 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 홀히 한 사람</u> 2. 3.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의 외부점검, 객실 등에 대한 점검, 항공기에 대한 출입 통제, 항공기 출입문 보안조치¹⁹⁾ 등 항공기에

19) 「항공보안법」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한 보안점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실시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²⁰⁾

개정안은 객실승무원이 내부점검 중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항공기 내·외부점검이 미흡했던 사례 등²¹⁾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 보안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현행법은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7조(항공기 보안조치)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매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외부 점검
 2. 객실, 좌석, 화장실, 조종실 및 승무원 휴게실 등에 대한 점검
 3. 항공기의 정비 및 서비스 업무 감독
 4. 항공기에 대한 출입 통제
 5. 위탁수하물, 화물 및 물품 등의 선적 감독
 6. 승무원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조치
 7. 특정 직무수행자 및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좌석 확인 및 보안조치
 8. 보안 통신신호 절차 및 방법
 9. 유효 탑승권의 확인 및 항공기 탑승까지의 탑승과정에 있는 승객에 대한 감독
 10. 기장의 객실승무원에 대한 통제, 명령 절차 및 확인
-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탑승계단의 관리
 2. 탑승교 출입통제
 3. 항공기 출입문 보안조치
 4. 경비요원의 배치

20) 「항공보안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21) 뉴스1, 「항공기 날개 위 인증샷…김은혜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2025.3.20.

대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²²⁾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과 유사한 취지에서 항공기 보안점검 미실시는 항공기에 대한 출입통제 등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해지는 것에 비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것²³⁾임을 고려할 때, 불법의 정도 및 다른 처벌 조항과의 균형성에 비추어 보안검색 미실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처벌규정의 상향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과 벌칙규정을 병과하고 있는데,

위반사항	현행	개정안
○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 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2)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5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23) 대법원 1969.7.29. 선고 69마400 결정

보안점검 미 실시라는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과태료와 벌칙을 병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²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벌칙에 포함되어 있어 벌칙만으로도 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행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벌칙을 신설할 경우 과태료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과태료 규정 삭제 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음.²⁵⁾²⁶⁾

24) 참고로, 법제처, 법무부 등은 과태료와 벌칙이 중복된 법령은 모두 벌칙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 중복개선 세부안」을 마련한 바 있음.(2010.02.23.)

25) 부칙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6)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형벌규정을 신설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 경우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보안점검을 미 실시하거나 소홀히하여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자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보안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타 벌칙조항에 비교할 때 처벌수준도 적정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국항공협회는 보안점검 업무 위반에 대해 이미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어 벌금 신설 시 하나의 의무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제재를 받게 되고, 항공기 보안점검은 안전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적 행정조치로서 행정질서벌 적용 대상으로 사료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